

2015 변칙세습포럼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명한다!

사회 | 조제호(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발제 1 |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_김동춘(국제신대 교수)

발제 2 | 교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칙세습 _황광민(석교교회 목사)

발제 3 | 교회세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찰과 기독교윤리 _고재길(장신대 교수)



일시 | 5월 26일(화) 오후 2시~4시

장소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세홀

주최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www.seban.kr

(회원단체: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

순서

사회: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 (5분)	인사말	방인성 목사 (함께여는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2:05 (20분)	발제1.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김동춘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p03
2:25 (20분)	발제2. 교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칙세습	황광민 목사 (석교감리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지도위원)	p15
2:45 (20분)	발제3. 교회세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찰과 기독교윤리	고재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p19
	첨부1 변칙세습 현황조사 결과		p33
	첨부2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소개		p41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 교회 사유화에서 교회 공공성으로 -

김동춘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한국개신교의 부끄러운 관행 가운데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담임목사직의 대물림이 있다. 담임목사직의 세습은 충현교회 혹은 광림교회처럼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에서 시도되면서 교회 내에서 음성적으로 기획·추진된 은밀한 관행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한국교회를 또 다시 조소거리로 만들고, 교회의 도덕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교회 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갱신그룹에서 세습 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비록 일부 교단이지만, 교단헌법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교회법 차원의 진일보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교단헌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변칙세습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칙세습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회세습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부당성을 재정리하고자 한다.

I. 변칙세습, 그 현상과 실태에 대해

1. 세습에 대한 일반적 정의

세습을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세습이란 혈연관계에 있는 비속이 존속이 차지하고 있던 어떤 지위를 존속의 퇴임 또는 사망 시에 승계하는 것을 일컫는 것”¹⁾을 의미한다. 여기서 세습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혈연관계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당연히 지위를 승계

받는 ‘직접세습’과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혈연관계가 가장 큰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는 ‘간접세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그런데 ‘교회세습’이란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세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세습’이란 목회자의 지위의 간접세습이다. 말하자면, 교회세습이란 “목회자의 지위를 혈연관계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승계하는 것”³⁾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교회세습 방지법에 대한 교단별 규정

교회세습이 한국교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자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 세습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세습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기독교감리회는 2013년 9월 25일 임시입법회의에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7항 36조)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감리교단의 이러한 개정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담임목사 파송제한 대상을 담임목사의 사위나 며느리까지, 그리고 부모가 장로인 경우에도 그 자녀가 담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다.⁴⁾ 감리교단은 세습 문제에 있어서 개신교단 중 가장 이슈를 일으킨 교단임에도 불구하고⁵⁾ 이러한 헌법 제정은 교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다른 교단의 세습방지법 제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예장통합은 좀 더 세밀한 문구로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는데,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1)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2) “해당 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그러나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항목을 추가했다. 통합교단은 모든 세습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특권과 이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불가피한 세습을 다른 부당한 세습과 구분하여 명기한 점이다.

기장교단 역시 다음과 같은 간결한 문구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시무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시무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것과, “부모가 시무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시무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총회헌법 제4장 22조 목사의 청빙 10-11항).

이렇듯 한국개신교 전체 교단은 아니지만,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1) 강문대,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목회자 지위 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주관,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 -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2013. 7. 30).
2) 강문대,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포럼자료집.
3) 강문대,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포럼자료집.
4) 나이영, “교회 세습 문제, 이제는 상식에서 생각하자”, 『기독교사상』 통권 645호(2012. 10), 273.
5) 교단별 세습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122개 교회세습 사례 중 40개 교회의 사례가 감리교단의 세습이다.

통과됨으로써 교회세습의 부당성에 대해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변칙세습의 등장과 그 현상

그러나 유력한 교단에서 세습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단의 세습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각종 변칙세습을 시도했거나 준비 중인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변칙세습 가능성은 세습법안이 통과된 이후 그 우려가 이미 제기되었다. CBS 최경배 기자는 예장통합총회가 결의한 세습방지 조항을 분석하면서, 그 조항에는 “은퇴 목사나 장로의 자녀를 해당 교회가 청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변칙세습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애초에 통합교단의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법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표결과정에서 부결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담임목사가 “은퇴하는 시점에 제3의 인물을 담임목사로 청빙했다가 다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의 이른바 '징검다리 변칙세습'을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을 소개한 바 있다⁶⁾.

세습 문제가 교계와 사회 전반에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직계세습’이나 ‘사위세습’과 같은 통상적인 세습이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아래 교단이 제정한 법적 기준을 피해 가면서도 여론의 지탄을 무마하는 교묘한 방식의 변칙세습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원용되고 있어 결국은 담임목사직 대물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 제보된 사례와 다른 매체를 통해 제시된 사례들을 종합하여 변칙세습의 다양한 유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⁷⁾

1). **지교회 세습**: 아들 목사나 사위 목사에게 담임하던 교회를 승계하는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지교회를 설립한 후 그 교회를 담임으로 가도록 하는 형태이다. 지교회 세습은 명분과 방식에 있어서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칙세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최근 메가처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중대형 교회가 지교회를 분립하여 개척교회를 세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많아지고 있다. 또한 분립개척은 개척교회의 사례로서 가장 성공적인 형태로 인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세습을 시도하는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시행함으로써 대형교회만의 독점적 성장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분립·개척한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양도하는 것은 교회내외의 비난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칙세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소망교회가 해당된다. 소망교회는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교회를 직접 넘겨주지 않고 다른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 주면서도 “정작 본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해서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세

6) “예장통합, 세습방지법 통과... 변칙세습 우려 제기돼”, CBS 노컷뉴스(2014. 9. 24).

7) 교회세습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부자간에 이루어지는 ‘직계세습’이다. 담임목사인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대물림의 방식은 교회세습에서 7~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 하나는 ‘사위세습’으로 아들 목사가 없는 경우나 아들을 담임목사로 이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CCC 김준곤 대표가 사위인 박성민 목사에게 대표직을 이양한 경우가 해당된다.

습의 형태를 띤 이른바 대표적인 변칙 사례의 하나”⁸⁾라고 할 수 있다. 지교회 세습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가 아들 길요한 목사에게 과천왕성교회를 설립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교회를 합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들을 왕성교회 담임목사로 끌어 온 경우와,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새노래명성교회라는 지교회를 설립하여 개척한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 **교차세습**: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회자끼리 아들 목사의 목회지를 교환하는 세습의 방식이다. 다시 말해 이쪽 교회의 담임목사의 아들을 저쪽 교회가 청빙하여 받아들이고, 저쪽 교회의 담임목사의 아들을 이쪽 교회가 청빙하여 받아들이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변칙세습은 목사 집안끼리 교회를 쌍방 교환한다는 점에서 양쪽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청빙 결정이 그야말로 목사 집안끼리의 담합에 의한 거래행위가 됨으로써 소위 성골집안의 잔치로 전락된다는 점이고, 그리하여 교회가 목사 집안을 위한 가족주의의 목적과 수단이 되고 만다는 점, 그리고 교차세습의 과정에서 양 쪽 교회의 교인들의 의사결정은 거의 배제되어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일사천리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한 쪽 교회는 담임목사에 대해 만족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는 교차 부임한 담임목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교회내 분란사태로 발전하게 되어 그 여파가 다른 한 쪽 교회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차세습의 사례는 천안 가나안교회(기성), 간석제일교회(기성) 등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훨씬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다자간세습**: 교차세습이 두 교회의 목사 아들이 서로 맞교대로 이루어지는 세습이라면, 그 범위를 양자간을 넘어 여러 교회가 서로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습을 말한다. 한양제일교회(기감), 은혜교회(기감) 등에서 시도한 경우이다.

4). **징검다리세습**: 이 변칙세습은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 손자가 목회지를 승계하는 경우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일개 가족을 위한 편의적인 목적 수단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선물을 안겨주는 가족주의의 한 전형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징검다리 세습은 순천광명교회(통합), 전주호남교회(예성), 서천제일교회(기감)에서 시도되었다. 이 변칙세습은 ‘격세세습’(隔世世習)⁹⁾이라고 부를 수 있다.

5). **분리세습**: 아버지 목사가 개척한 여러 교회중 하나를 아들 목사에게 맡기는 세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교회 외에 다른 복수의 교회를 분립개척한 후 그 중 하나의 교회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 세습의 방식 역시 외형적으로는 직접적인 세습의 방식을 띠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세습을 관철시키는 이른바 ‘양태론적 변칙세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6). **통합세습**: 분리세습과 정반대의 형태로서 아들이 개척한 교회에 아버지 교회가 통합한 후

8) 편집부, “다시 불거진 세습 논란”, 『기독교사상』 통권533호(2003. 5), 22-32. 소망교회 당회가 광선회 목사 성역 4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는 500평 규모의 아담한 교회였으나, 광선회 목사는 생일축하자리에서 1,250평 규모의 교회의 규모로 확장하고, ‘기념교회’에서 ‘지교회’로 변경하여 소망교회의 재정 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9)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해, 김희권, “교회세습이 부당한 신학적 근거”, 『목회와 신학』 (2012. 12), 156.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방식이다. 최근 들어 교회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교회의 존립과 활로를 타개하는 차원에서 교회와 교회간의 합병작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요약한다면, 통합세습은 아버지와 아들 교회가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두 교회의 분위기를 일신하여 교회의 담보상태를 타개해 나가면서, 동시에 목사직도 세습·이양하는 매우 실리적인 변칙세습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7). **동서간세습:** 동서간에 교회를 넘겨주어 대물림하는 세습을 말한다. 통계상으로는 한 곳의 교회(영일교회, 기감)에서 시도한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다. 이 경우는 친인척중에 목회자를 이양받아 이루어지는 세습이므로 ‘친인척 세습’¹⁰⁾으로 부르기도 한다.

8). **쿠션세습:** 아버지 목사가 자신과 가까운 목사에게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양한 다음, 이를 다시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세습이다. 외형적으로 세습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교회를 신뢰할만한 다른 목사에게 이양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원래 목적대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이 변칙세습은 징검다리 세습과 약간 유사한 방식으로 ‘건너뛰기 변칙세습’이라 부를 수 있다.

II. 교회세습, 그 현상속의 본질은 무엇인가?

1. 사회현상으로서 세습: 세습에 대한 사회현상적 고찰

교회세습 현상이 개신교 전체에 만연된 배경에는 단지 목사들의 비윤리적 퇴락현상이라는 진단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교회세습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관찰할 때,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세습 자본주의의 교회적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는 이 현상은 우리 사회 안에 만연된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사회는 외형적으로는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장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매우 불균형적이며, 부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된 상황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지난 날 왕성한 경제성장기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잘 살아보세’라는 계몽적 근면 윤리가 먹혀 들어갔다. 그 당시에는 개인의 삶의 운명이 개개인의 성실도와 근면성, 그리고 맨땅에 해당하는 개척자 정신에 의해 일정 부분 타개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적 자본주의 사회가 확실하게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학맥, 출신, 배경)이 일정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사실상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만으로는 신분상승이나 운명 타개의 기회가 봉쇄되어 버렸다. 한국사회는 점차적으로 탄력적이며 역동성이 뚜렷한 사회에서 점차 고정화된 시스템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한 번 추락한 사람은 다시는 재기의 기회가 박탈된 사회이며, 더구나 우리 사회는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 갈 틈을 주지 않는 측면이 많다. 즉 우리사회에서 신분상승의 길은 인맥, 동향(同鄉), 학맥, 동문회, 선후배 관계로 촘촘하게 그물망이 쳐져 있어서, 소위 ‘뜯보잡’ 인간은 기존질서로의 진입의 장벽이 가로 막혀있는 사회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모든 일을 명문화된 계약, 규정,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끈끈한 인정주의와 기득권 문

10) 김회권, “교회세습이 부당한 신학적 근거”, 156.

화가 결합되어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탓에 원칙과 상식, 공정성에 따라 통상적인 규정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고, 선발하고 채용하지 않는다. 최근 공무원 시험 열풍은 그나마 그 영역이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공정한 룰에 의해 선발, 채용되어, 생존할 수 있다는 최소 기준치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의 확보와 수호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일정한 기득권을 확보한 계층은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하여 자신의 가족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려는 몸부림이 사회 전체에서 발견된다. 그런 맥락에서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 문제되고 있다. 교육현실에서도 세습현상이 일고 있는데, 명문대학 진학률에서 전문직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현저하게 합격률이 높다. 청년 실업이 가중되자 부모세대가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체를 자식이 이어받는 일이 빈번하게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의 지속, 복지국가의 쇠퇴, 능력주의의 쇠퇴, 세습 자본주의의 공고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세습자본주의’¹¹⁾라는 새로운 현상이 우리 사회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건물을 물려주거나, 회사나 사업체를 물려주거나,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세습은 자본체로서 교회라는 물질 자산을 교회 귀족층, 혹은 교회 기득권층이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하는 현상으로, 한국사회의 세습 자본주의의 교회적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교회현상으로서 세습: 왜 세습을 하는가?

1). 세습은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기 위한 인위적인 편법이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로 소명 받은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수받은 모든 목사들이 담임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제한된 담임목사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구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목사가 되는 길은 청빙을 받거나, 분립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매매·거래를 통해 사들이거나, 팀목회나, 교회합병을 통한 방식들이 있다. 오늘날 교회사역의 다변화로 인해 평생을 담임목사가 아닌, 부교역자로 사역할 수도 있고, 교육전담 사역자나, 상담 사역자나 복지 사역자, 기독교 NGO 사역자나, 기독교 출판 사역자로 교역하는 풍토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신학생과 목사들은 교회 사역의 종착점을 담임목사가 되는 것에 맞춰있다는 데에 세습 관행이 작동하는 한 요인으로 설명된다.

더구나 한국교회의 교회 문화는 유교문화적 일인 지도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탓에 공동목회나 협동목회, 팀목회 등, 복수의 공동 담임목사 체제가 수용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 공

11) 이진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한국경제: 자수성가형 사회로부터 세습자본주의로의 퇴화”, 『선진 한국』 통권183호(2015. 2), 34-37, 유종일, “세습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능력주의 부정: 부자의 자본 수익이 노동자 임금 상승 압도… 전 세계적인 부유세 도입 주장: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열풍”, 『이코노미스트』 통권1238호(2014. 5), 20-24.

동 지도체제, 공동목회 방식이 교회 정서상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교회 공동체에서 흔하게 회자 되는 ‘태양이 두 개 일 수 없다’는 말은 한 교회 안에서 담임목사 외에 또 다른 목사에게 동등한 영적 지도력을 부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성적 사고가 한국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교회세습은 누군가 한 사람의 목사만이 개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정점에 올라서야 하는데, 담임목사직의 공급에 비해 그것을 희망하는 목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데서 파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가 되는 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의 개신교 신학생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담임목사가 되기 위한 치열한 싸움터에서 자신의 소명의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래의 경우의 수에 포함될 목사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청빙

외형적으로 볼 때, 청빙이야말로 담임목사가 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청빙, 즉 목회자를 ‘모셔오는’ 방식은 그리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빙에는 ‘경쟁선발’이라는 과정이 동반한다. 한 교회에 담임목사를 뽑을 때, 보통 100: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막후 움직임이 일어난다. 담임목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청빙위원장 장로에게 청탁이 들어오기도 하여 청빙완료 후에도 불미스러운 잡음이 일기도 한다.

· 분립

한 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교회 교인의 일부를 떼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담임목사를 세우는 방법이다. 분립개척에도 건강한 형태와 불량한 형태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담임목사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분립이란 편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 매매

교회매매는 담임목사가 자신이 성장시킨 교회에서 목회에 한계에 봉착했을 때, 다른 목사에게 팔고 나가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교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임목사와 후임목사사이의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진다. 교회매매는 교회를 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가장 자본화된 교회현상이자, 상품화된 교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목사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를 받아가는 형식의 교회매매가 공개리에 교회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¹²⁾.

· 개척

교회개척은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의 목사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사와 그 가정이 예배공간을 임대하여 인테리어 하여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교회 성장 이후

12) 박요셉, “목회지 알선 복덕방, 돈맛이 쏠쏠”, 『뉴스앤조이』 (2015.04.19).

또는 교회를 포기할 경우 또 다시 교회를 매매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 **공동목회, 팀목회, 교회합병,**

위와 같은 복수의 지도체제를 가지고 협력적인 목회 형태가 발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교회에서 이 방식은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 **교회세습**

결국 교회세습, 혹은 담임목사직의 대물림은 앞에서 열거한 담임목사가 되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로서, 편법이며 불법이기는 하지만,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가 담임목사인 경우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방안의 하나인 것이다.

2). 교회세습은 교회 자원을 대물림하기 위한 교회 사유화 현상이다.

교회세습은 단지 담임목사직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물적 재산, 즉 교회 자원을 대물림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세습은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혹은 그 가족, 친족 중 1인에게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교회 사유화의 잘못된 관행이요 악습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교회세습, 왜 부당한가?

1. 교회세습은 교회 사유화이다.

교회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이다. 교회는 결코 인간 베드로의 믿음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다. 또한 교회는 사제들의 교회가거나, 추기경의 교회, 혹은 로마교황의 교회가거나 총회장의 교회가거나 교회 설립자의 교회가 아니다. 더구나 교회는 교회 설립 시 거대한 헌금을 기부한 유력 장로나 권사의 교회가 아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시킨 담임목사의 교회도 아니며, 그 아들 목사나 그 직계가족의 교회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나라 백성의 교회이다.

교회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사적 소유물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처분되거나 이양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아들 목사나 사위에게 대물림하여 세습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 위배되는 일이다.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여 세습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교회이며, 교회의 터는 어떤 인간적 공로에 의해 세워지지 않아야 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부인하는 교회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교회세습이 부당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상의 주인은 주님이며, 현실적으로 교회 구성원 전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목사직을 가족 안에서 주거나 받거나 하는 세습교회는 그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특정 가족의 혈연으로 맺어진 교회이며, 한 목회자 집안의 교회임을 공언하는 것이다¹³⁾. 신약성경이 말하는 ‘가족으로서 교회’는 혈연과 특정 계층의 가문에 의해 배타적으로 형성된 가족교회가 아니라 혈통, 성, 인종, 사회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환대의 공동체임을 의미한다(갈 3:28).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생활에서 민주적 사고나 교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순종 잘 하는 성도, 충성·봉사하는 성도가 좋은 교인이라고 길들여 있는 탓에 교회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목사직의 패러다임은 **가부장적 목사직**으로부터, **성장주의 목사직**으로, 그리고 **생존형 목사직**으로 변천을 거쳐왔다¹⁴⁾. 교회세습은 이 세 가지 유형의 목사직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형성기에 가부장적 유형의 목회자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다. 그런 탓에 아버지 목사에 이어 아들 목사의 대물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가부장적 목사에게 훈련받은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순응형 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한국사회의 정서에는 가족주의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세습한다는 이 사실이 그리 부당하게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당하고 편법으로 담임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교회만 성장시켜 수적인 부흥을 가져온다면 세습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교회성장주의자들의 사고이다. 그들은 결과론적이며 목적론적 사고로 인해 세습 문제에 비판적이지 않다. 이제 생존형 목사직의 시대에 접어들자,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들 중에 아예 노골적으로 요즘같이 교회개혁이 어려운 시대에 오죽하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 하겠냐는 동정 유발성 변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세습 불가피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세습이 문제인 것은 교회가 공익적 종교기관이 아니라 일개 가족과 특정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익적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세습을 용인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교회임을 부정하고, 교회가 사기업이라는 것을 공인하는 격이 된다. 그러나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며, 목회자는 대주주가 아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회장이나 사장을 임명하지만 교회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영이 지배하는 공동체이다”¹⁵⁾. 더구나 “주식회사의 경우 초기 투자금을 가장 많이 내거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발언권, 경영권 등에서 비례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다”¹⁶⁾. 심지어 목회자나 개척교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 교회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주식회사처럼 재가하지 못한다¹⁷⁾. 교회세습이 부당한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통치 아래, 진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거룩한 교회를 사기업화하기 때문이다.

13) 이호영, “말씀의 절대화, 성도의 노예화, 교회 세습”, 『기독교사상』 통권544호(2004. 4), 284-294.
 14) 김동춘, “오늘의 목사직,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편), 『목사란 무엇인가? - 사제주의 비판과 목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 (대전: 대장간, 2015), (근간).
 15) 김회권, “교회세습이 부당한 신학적 근거”, 159.
 16) 김회권, “교회세습이 부당한 신학적 근거”, 159.
 17) 김회권, “교회세습이 부당한 신학적 근거”, 159.

2. 교회세습은 목사 일인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이요 사리사욕이다.

대체로 교회세습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담임목사직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대형교회로 성장시켰거나,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행사했던 목회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대형교회 목사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교회세습을 관철하려고 한다. 회사나 직장에서 아무리 장기간 근속했을지라도 은퇴하면 그날로 모든 직책과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개척시대의 원로목사들은 목사직을 ‘가부장적 목사직’ 패러다임 안에서 구축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지배와 권위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소통적이며, 평등하며, 민주적 사고에 따라 목사직을 훈련되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목사의 영적 권위와 통치력을 강화하는데 목사직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장기간 목회했던 교회에서 담임목사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기확신을 가지면서 세습을 감행하게 된다. 결국 그 교회는 아버지 목사가 누렸던 명예와 권위와 물질적인 특혜를 아들에게도 물려줌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한낱 목사 가족의 대대손손 물질적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3. 교회세습은 절차적 민주성과 공적 타당성, 공정성에 위배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정인물의 권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담임목사가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관여하여, 아들이나 친인척을 후임으로 세운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담임목사라는 것을 보여준다.¹⁸⁾ 교회세습은 교회의 중심에 담임목사가 서 있음을 나타내며, 성도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절차상의 민주적 과정이 없이 세워진 후임목사의 지도력은 일시적으로는 일시분란하게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속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교인들의 감수성과 충돌하면서 많은 경우 교회를 이탈하는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 교회세습은 종교기관으로서 교회의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다. 교회는 주식회사도 아니며, 자본을 투자한 기업주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포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관이며, 일반 사회의 관행보다 탁월한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교회의 후계자를 선정하고 이양하는 방식이 일인 독재 정치 체제나 기업주의 부자세습처럼 비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그러한 행태는 사회 일반이 생각하는 보편 상식과 타당성에 맞지 않는 처사가 될 것이다. 한국개신교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사회 속의 공적 영역에서 신앙의 타당성 문제이다. 교회가 말하는 신앙이 교회 내에서만 확실한 진리가 아니라 교회 밖의 공공의 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확신되고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합리적이며 세속화된 근대화로 진입한 지금,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주술적이며 폭력적인 종교권위를 수단으로 목사의 독단적인 생각을 관철하려 했던 관행들이 점차 개교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저항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식은 이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교회에서 좋은 신앙이란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18) 김명용, “목회자의 세습에 대한 비판”, 『교회와 신학』 (2000, 겨울호), 16.

비약과 초월주의적 신앙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믿음, 상식을 존중하는 믿음, 타당성과 설득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¹⁹⁾.

4. 교회세습은 교회의 공교회성을 저해한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공교회성은 개교회주의와 교회 사유화 사고와 배치되는 원리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목소리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한다. “교회 밖 상식에서 바라볼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려받는 것은 특권일 뿐이며, ‘아들 대물림’을 결정한 교회 내부의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발상은 사회와 격리된 개교회주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격이다”²⁰⁾.

한국개신교의 가장 큰 해악은 종교적 우월감과 세상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교회 문제를 언제나 교회 내부자 시각, 즉 교회 중심주의 시각, 교회 옹호론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며, 교회 바깥의 시각, 즉 공론장에서 제기하는 다른 의견과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²¹⁾. 그런 이유로 교회의 신앙언어는 사회의 공공성과 매번 충돌할 수밖에 없다²²⁾.

교회의 세습은 교회가 공교회가 아니라, 담임목사와 그 가족을 위한 사(私)교회이거나 몇몇 장로들의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교회는 소수의 특권자들의 교회가 아니며, 교회내의 몇몇 사람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교회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이며,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의 교회이다. 목회자 세습은 사도신조의 기본조항의 하나인 교회의 공교회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 비판되고 거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교회의 목회자는 사도적 신앙을 준수하여 교회의 일치성(unity)과 보편성(catholicity)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 누구의 인간적 가문의 소유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는 목사 집안의 혈통적 세습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로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회집임을 기억해야 한다.²³⁾

IV. 나가면서

교회세습에 대한 대안: 교회 사유화를 넘어 공교회성으로

19) 김동춘, “한국 개신교와 공공성: 왜 한국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었는가?”, 『건지인문학』 제10집 (2013), 68-72.

20) 나이영, “교회 세습 문제, 상식에서 생각하자”, 277.

21) 김동춘, “한국 개신교와 공공성: 왜 한국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었는가?”, 57-58.

22) 김동춘, “왜 개신교 신앙 언어는 공공성과 충돌하는가?”,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 (대전: 대장간, 2014), 79-96.

23) 김광식, “교회 세습에 관하여”, 『기독교사상』 통권504호(2000. 12), 210-218.

교회세습은 ‘교회의 사유화’, ‘교회의 개교회화’, 그리고 ‘목사의 귀족화’의 결과이다²⁴⁾. 그러나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는 욕망은 쉽사리 사라졌지는 않을 것이다. 변칙세습은 앞으로도 더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출현할 것이다. 세습을 막아내려면, 무엇보다 목사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과 의식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된다. 예외적인 세습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목사 가문에게 부여된 특권과 기득권을 가로챌 동기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대물림하는 세습은 교회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며, 떳떳하지 못한 일이며, 세상의 통념적인 관행상의 정의에도 수준 미달의 행태에 속한다. 기득권을 향유하듯 담임목사직을 대물림받아 가로챈 행위는 마치 사기업체의 회장직을 아들이나 사위가 승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그것은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임을 짓밟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아니라 일개 가족의 영구 집권을 위한 종교권력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변칙세습의 욕망을 끊어내려면 교회 사유화를 향한 퇴락한 사고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공교회적 존중과 의식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개개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 향유와 기득권 확보를 향한 부패한 욕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이며 법적 규제가 더 치밀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4) 강영안, “담임 목사직 세습, 왜 문제인가”, 『철학과 현실』 47권(2000), 96.

- 교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칙세습 -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

황광민 목사

(석교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지도위원)

2012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는 직계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교리와 장정 제3편 제36조(담임자의 파송) 2항에 보면,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3항에서는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지하였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강남의 모 교회에서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하였다. 근처에 지교회를 세우고 부담임목사를 담임자로 파송하였다가 1개월 후에 담임목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본교회의 위장담임자로 세우고, 다시 1개월 후에 이를 발판으로 삼아 아들을 담임목사로 교체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목사는 형식상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되어있는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이들은 세습금지법에 ‘연속해서’ 앞에 ‘영구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법을 제정할 당시 필자는 장정개정위원으로 참여하였었다. 그때 토론 중에 ‘영구히’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필자를 비롯하여 몇 위원들이 ‘7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는 담임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가 원하면 초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넣지 않았다. 위장담임자를 세워 불법적인 징검다리 세습을 하리라고 상상하지도 않았다.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연회 감독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징검다리 세습이 합법인가 또는 불법인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직권으로 거부하지 않고 해석을 의뢰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아무튼 당시 필자는 장정유권해석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토론하는 중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세습은 불법’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조인 정족수의 미달로 결의를 하지 못했고, 결의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었다.

얼마 후에 다시 유권해석위원회가 모였는데 어처구니없게도 후임감독이 해석의뢰 건을 철회하여 결의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해석하고도 결의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여기에는 고의성이 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연회감독은 교회의 징검다리 세습을 결재하여 주었는데 그는 결국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우롱하는 불법행위를 목인한 원흉이 되고 말았다. 필자가 해당연회 책임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하니 결의된 바 없다고 핑계하였다.

그러자 이를 빌미로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났다. 인천의 모 교회에서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무임목사를 1개월간 위장담임자로 세웠다가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강남의 또 다른 교회는 정회원 1년급의 어린 목사를 위장담임자로 세우고 아버지 목사는 부목사로 있다가 아들 목사를 담임자로 세우는 불법세습을 감행하였다. 또 어떤 교회들은 자녀 목회자를 맞교환하였다가 몇 달 후에 다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런데도 해당 행정책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교회의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다.

최근에는 필자가 속한 연회에서도 모 교회가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시도하였다. 조금 더 포장을 하여 은퇴를 앞둔 무임목사를 1년간 위장담임자로 세웠다가 아들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불법세습을 감행하였다. 지방 행정책임자인 감리사가 이를 목인하고 구역인사위원회를 주재하여 결의를 하고 연회에 파송을 청원하였다. 위장인줄 알면서도 ‘영구히’라는 말이 없으니 합법이라고 판단한다. 이 건은 현재 연회감독이 결재를 거부하고 서류를 돌려보낸 상태다.

담임이라 함은 책임목회를 하는 자리다. 얼마의 사례를 받고 이름만 올려놓는 담임자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세습을 전제로 세우는 목사는 담임목사가 아니다. 이런 허수아비 위장담임자는 원천무효다. 세상에서도 위장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에 발각되면 원천무효로 판단하는 것이 상례다. 위장결혼을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장이혼을 통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에 발각되면 원천무효로 하고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 일반사회에서도 위장을 불법이요 사기로 판단하는데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어찌 위장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장담임을 통한 불법세습을 시도하는 목회자들과 이를 목인하는 행정책임자들의 신앙양심의 부재, 준법정신의 부재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 그래서 친분의 벽을 넘지 못한다. 적당히 사례를 하면 모른척하고 대충 처리한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공교회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공교회가 살아야 개체교회가 산다.

또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이들도 불쌍하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가 강요에 의해 불법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목회를 불법행위로 시작하면 그의 평생의 목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은퇴를 앞둔 목사들이 얼마의 사례를 받겠지만 불법세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목회를 마무리하게 되니 딱한 노릇이다. 목사는 불법세습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당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필자는 금년 연회에서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막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로써 징검다리로 이용당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행정책임자들에게는 친분 때문에 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건의안을 올렸다. 그리고 사실 이 건의안은 힘을 발휘하여 불법세습을 통한 담임자 청원을 거절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금번에 필자가 올린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건의안

수신: 서울연회 건의안 심사위원회

제목: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 척결의 건

우리 감리교회는 2012년 입법의회에서 직계 자녀에게 담임자 세습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사회적으로도 좋은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그러나 불법과 편법이 여전히 고개를 들고 불법세습의 시도는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징검다리 세습’이다. 즉 위장 담임자를 징검다리로 세워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 2항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영구히’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검다리 세습이 합법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불법이다.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자 어느 교회는 한 달 짜리 위장담임자를 세웠다가 바꾸는 형식으로 세습을 감행하였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어린 목회자를 위장 담임자로 세웠다가 세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무임목회자를 위장 담임으로 세워 세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징검다리 세습을 위한 위장담임은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원천무효다.

이에 우리 서울연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장 담임자를 세워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것이 불법임을 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위장담임의 경우 원천무효하고, 징검다리 세습에 대하여는 감리사가 주재하는 구역인사위원회나 감독의 결재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로서 타 연회에 모범이 되는 깨끗한 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황광민 회원 외 10명

이 건의안은 연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것은 불법세습을 막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불법세습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세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앙양심을 포기하고 불법을 강행하는 이들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신앙양심에 호소해도 안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호소해도 안 된다면 법적인 제재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짚어 보자.

감리사가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세습인 줄 알면서도 구역인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승인하였다면 감독이 연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면 감독회장이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현재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에 따르면 교역자(감리사, 감독 포함)가 직권남용을 하였거나 규칙을 오용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책임자만 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리사가 불법세습을 인정하였다면 지방회원이 감독에게, 감독이 불법세습을 결재하였다면 연회원이 감독회장에게 고발할 것을 청원하면 된다. 그런데 행정책임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교회법으로는 더 이상 처리할 길이 없으므로 사회법에 제소하여야 한다. 규칙오용이나 직권남용은 행정책임자만 고발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고발을 거절한다면 사회법에 제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세습을 막아야 한다.

교회세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찰과 기독교윤리

고재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1. 서론²⁵⁾

최근에 이르러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홍정길) 본부는 2014년 1월 15일에 2010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위는 가톨릭(29.2%), 불교(28.0%), 기독교(21.3%) 순으로,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타종교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93건)', '교회 내부적 비리/부정부패가 많아서 (81건)', '타종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44건)', '강압적 선교방식(43건)' 등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가운데 45.5%가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교회세습의 문제를 다루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²⁶⁾

아래에서 필자는 이러한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를 세습문제와 연관하여 기독교윤리학의 관

25) 아래의 소고는 필자의 발표문 -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와 기독교윤리”(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2014.05.30), “한국사회의 가족주의문화와 기독교윤리”(한국기독교학회, 2014.11.1) -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26)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94>

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 - 가족주의 문화의 개념 이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족주의,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의 특징, 가족주의와 교회세습에 대한 평가, 결론 -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히 본 소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회세습에 대한 평가’에서 필자는 나사렛 예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필자는 본회퍼의 신학적 윤리사상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임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가족공동체 및 교회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목회윤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²⁷⁾

2. 개념 이해: 가족주의 문화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며 “창조 이후에 인간의 손길이 덧붙여진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²⁸⁾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가족주의 문화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창조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의 가족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관계성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는 문화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기대어서 가족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히버트(Paul. G. Hiebert)에 의하면 문화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을 조직화하고 규제하려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사고, 감정, 가치와 이와 연관된 결과물들의 형식들이 다소간 통합된 체계”²⁹⁾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 개념에 근거할 때 가족주의 문화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사고, 감정, 가치를 지배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의 양식으로 이해된다. 셋째, 가족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어츠(G. Geertz)가 말하는 문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문화를 “역사적으로 전승된 ‘의미의 패턴(patterns of meanings)’으로서 “상징으로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문화는 “사람들이 삶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나누고 영속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을 통해 상징의 형태로 표현되어 ‘역사적으로’ 전달되는 개념들의 체계”이다.³⁰⁾ 기어츠는 문화를 기본적으로 인간 공동체의 삶의 체계로 이해하면서도 그것의 역사적 전달성에 주목한다. 이는 가족주의 문화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한 세대에서 형성되고 사라지는 일회적 사건의 복합체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여러 세대의 구체적인 역사성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족주의란 무엇인가? 가족주의를 이해한다면 가족주의 문화는 더욱 명확한 개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회학자, 박영신은 가족주의를 개인의 삶의 윤리적 지향성과 연관하여 다음

27) 물론 교회세습을 방지하는 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세습방지법안의 형성이나 또는 목회청빙에 대한 개혁 법안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필자는 본 소고에서는 제도적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목회자의 의식개혁과 목회자의 결단의 중요성을 더 살펴보고 싶다. 물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방법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28) 임성빈, “새 천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과제로서의 문화선교”, 『교회와 사회』 (서울: 성광문화사 2002), 21.

29) P.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30. 임성빈, “새 천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과제로서의 문화선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학위원회 편, 『교회와 사회』 (서울: 성광문화사, 2002), 22 재인용.

30)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89, 송재룡, “가족주의와 한국 사회의 ‘삶의 유형’ (두 개의 언어 게임 사이에서)” 현상과 인식 26권 (2002), 2-3에서 재인용.

과 같이 말한다.

“우리 사회의 조직 원리는 가족주의이며, 우리의 윤리 지향성은 바로 여기에 터하고 있다.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가 하는 것은 근원에서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 나아가 위계질서와 친밀성의 원형이 되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에 얼마나 충실하고 어울리는가에 달려 있다. 부모와 그 핏줄을 타고난 자식의 관계는 가장 기본 되는 관계이고 그것은 가장 자연스런 관계이며, 그것은 위계, 친밀의 관계이며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이 관계의 핵심은 효이며, 그것이 첫째가는 행위의 동인이다. 이것을 원형으로 삼아 모든 인간관계와 행위를 판단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윤리 지향성이다.”³¹⁾

가족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다. 문제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가치가 됨으로써 가족주의가 가족성원들의 각각의 도덕적 삶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족공동체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가족주의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문화적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가족주의 문화의 부정성을 극복하는 일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3.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족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가족은 “성적 관계와 출산 및 양육의 장소”이며 동시에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교육, “사회화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서구의 시각, 즉 엘리엇(F. R. Elliot)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때로는 “붕괴하기 직전에 있는 억압적인 기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교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가족이 갖는 중요한 역할이 상실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전통사회와 문화에서 가족은 “핵심적인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³²⁾ 류승무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 문화를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가족의 사회적 역할과 친족제도, 상속제도와 가족주의 문화, 가족주의 문화와 정치적 지배질서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가족의 사회적 역할과 친족제도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가족은 “혈연관계를 비롯한 연줄망(social network)의 사회적 기초”로 작용하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우선 그 사람의 가문과 집안, 그리고 그 사람의 조상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보”에서 찾았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회적 지위

31) 박영신, “두 갈래의 윤리 지향성, 그 울을 넘어” 『사회이론』 제 16집 (1998), 186.

32) 류승무, “한국가족주의 문화의 변화과정 연구”, 중앙승가대학논문집, Vol.1 No.- [1992], 259.

대신에 자신의 가문 혹은 집안의 조상들의 함자와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여기에서 오늘날 봉건적 신분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족주의 문화의 부정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가족주의 문화가 가부장적 가족관계 안에서 형성될 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즉 한국사회에서 “수직적 사회관계”를 형성시키는 가부장적 가족관계는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의 토대위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임금과 신하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 남성과 여성 등 모든 사회적 관계를 수직적 성격으로 규정짓는데 합리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부정성은 한국사회로 하여금 “자연히 평등의 출발점이 되는 수직적 사회분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가족주의 문화는 한국의 전통문화의 중요한 틀이 되는 친족제도와 연결되면서 더욱 견고해진다. 즉 친족제도는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를 꽃피운 텃밭”과 같은 것이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친족은 동일한 조상을 가진 구성원들이 같은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여 살았다. 어떤 경우에는 몇 개의 친족공동체가 모여서 “동족 촌락”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친족제도가 그 조직을 운영하는 내규에 따라 움직인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즉 그 친족의 종손과 어른은 최종 의사결정자였고 친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항규’가 있었다. 그러므로 친족제도는 “가족제도의 산물”인 동시에 “친족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주의 문화를 지탱하는 “제도적 장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³³⁾

2) 상속제도와 가족주의 문화

그러면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위와 같은 가족주의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주의 문화는 수직적 위계질서의 문화를 지속시켰지만 수평적 관계질서의 문화는 지체시켰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베버(M. Weber)가 옳게 지적하였던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직접 지배하는 것은 관념들이 아니라 물질적-이념적 이해관계”이다.³⁴⁾ 베버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형성, 유지, 발전되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가족주의는 상속제도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즉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물질적 이해관계는 바로 상속제도였다. 제사상속, 재산상속, 호주상속 등으로 나누어지는 상속 제도를 통해서 가족주의는 지속되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³⁵⁾ (1) 제사상속: 이것은 가계의 계승을 뜻한다. 가계의 계승과 영속은 조선조 대가족제도의 기초였다. (2) 재산상속: 제사상속은 재산상속과 불가분리의 관계 하에 있었다. 서자가 아니라 적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특별히 재산상속은 장남에게 유리했다.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장남의 특권은 가정과 친족 내에서 남성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게 하였고 이는 한국사회에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가능하게 했다. (3) 호주상속: 적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신분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서자를 천대했던 조선시대의 문화는 서자 출신을 천시하는 족쇄 역할을 했다. (4) 적제봉사: 적자가 제사를 지내는 일은 종가의 위계와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제사상속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가족주의 문화를 유지하는 데

33) 위의 책.

34) 위의 책, 260.

35) 위의 책, 260-261.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 가족주의 문화와 정치적 지배질서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는 가족의 사회적 역할 및 친족제도와 분리시켜서 설명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다루었듯이 가족공동체와 친족공동체 안에서 적용되었던 상속제도와 연관성 아래에서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가족주의가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³⁶⁾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적 사회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이 작은 시골이나 마을까지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 즉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제는 향촌사회에까지 지배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작은 시골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향촌 사회는 그 사회와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집단과 규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향촌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향약을 만들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 형법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향촌사회의 향약은 “비강제적인 도덕이나 예의의 성격”이 강했다. 즉 “경국대전이 신체적 처벌과 가혹한 사회적 지위박탈을 근간으로 하는 강제적 성격에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비하여, 향약은 유교화의 내면화를 통한 행위의 자발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향촌사회의 운영원리에 대해 퇴계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제부터는 무릇 우리 향사들은 성명의 리(理)를 근본으로 하고... 각기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서 ... 오직 반드시 특별한 조목을 세워서 권할 것이 아니라, 역시 형벌도 쓸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같이 함을 알지 못하고 예의를 침범하여 우리 고을의 풍속을 허물면, 이는 하늘의 폐민이라, 비록 형벌을 없애고자 하나 어찌 되겠는가?”³⁷⁾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는 향약에는 “가족 내의 도덕과 질서, 향촌사회 내의 인간관계의 조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등의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향촌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든 향약이 국가의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대의명분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향약은 국가 내부에서 수직적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이론적인 틀, 이데올로기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요구와 의무는 “가족주의 문화의 수직적 인간관계 또는 향촌 사회 및 국가의 질서, 그리고 세계질서의 근본”이 되었다. 이러한 수직적 인간관계 및 사회질서가 “점차 제도화됨에 따라 자식은 부모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신하는 임금에게, 중자는 장자에게, 천민은 양반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그리고 아이는 어른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위로 굳어졌다.”³⁸⁾ 이러한 사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인정되지 못했음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부정적인 형태의 정치적 질서를 배태시킨 가족주의 문화가 오늘의 한국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6) 위의 책, 261-262.

37) 민족문화추진위원회편, 『퇴계집 2』 (1968), 위의 책, 262에서 재인용.

38) 위의 책, 262.

4. 한국의 가족주의의 특징

1) 이기적 가족중심주의

한국에서 가족주의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가족적’이라는 말과는 매우 다른 뜻을 갖고 있다. ‘가족적’이라는 말에서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주의라는 용어는 오히려 공동체적 의미를 약화시킨다. 가족주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가족중심주의와 연결되는 부정성을 갖고 있다. 후쿠야마는 가족주의가 배타시키는 부정성에 대해서 이미 비판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가족주의는 “신뢰가 낮은 사회의 특성”이며 한국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도 사회적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로서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이다.³⁹⁾

부정적인 가족주의적 가치체계는 한국의 정치영역에서 잘 나타났다. 당을 운영하는 최고의 당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자유친적 집단주의적” 가치와 그것을 따르는 규율은 정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문화권에서는 “당수의 견해와 결정을 무조건 추종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치인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의견 수렴과 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⁴⁰⁾ 이러한 가족주의의 부정성은 기업경영의 영역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재벌기업들의 조직 및 경영 방식을 검토할 때 거기에서는 “전형적 가족 집단주의 의식 및 행태를 반영하는 기업 경영 룰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근대적이고 합리적 경영방식에 기초한 룰이 효율적으로 발휘되지 못한다.” 글로벌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조직의 관계로 보기보다 가족주의적 관계 망의 확대에 인식하기 때문에 개혁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가족주의적 가치가 이처럼 견고한 것은 자기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부정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가족중심주의 곧 “부정부패의 문제”로 이어진다. 부정부패가 주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은 상황, 곧 거래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사회 조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각종 계약이나 법적 규정에 기초한 형식적 룰이 있지만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 형식적 룰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권력에 의존한 강요 또는 법적 소송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거나 특별한 조건에서 뇌물이 사용되기도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적 및 제도적 장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⁴¹⁾

39) 양창삼, “조직의 가족주의 문제와 공동체성 회복”, Hanyang Business Review 제 14권 (2002. 12), 9에서 재인용

40) 위의 책, 9.

41) 위의 책, 9-10.

가족주의는 한국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난 가족주의는 이기적인 가족중심주의의 부정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성은 “연고주의”와 연결되었고 이럼으로써 한국사회에는 ‘우리주의’라고 하는 집단이기주의적 물이 작동되었다. 특정 지역이나 학연 및 학연 등과 같은 연고를 가진 사람이 사법적, 도덕적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연고주의에 기대어서 다양한 형태의 선거에 출마할 경우 어렵지 않게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2) 문화적 문법(grammar)으로서의 가족주의

한국의 가족주의는 건전한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여 성장하고 성숙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자기 가족중심주의로 전락함으로써 사회적 역기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가족주의의 부정성은 집단적 배타주의와 연고주의와 결합됨으로써 한국사회의 각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한국의 가족주의는 한국의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의 문법(grammar)과 습속(habits)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가족주의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특징이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를 들먹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문화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유교적 정신과 가치는 한국인의 사고와 행태에 막강하고 질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⁴²⁾ 정수복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차원의 “지속적인 영향력의 기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유교가 조선시대의 지배적 유리규범으로 자리 잡은 이후 부계제와 가부장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통해, 그리고 제례와 장례 등과 같은 한국인의 의례적인 삶의 형식을 통해 유교적 규범과 가치가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일제와 해방 이후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정치세력은 조선시대 이후 형성된 유교를 변형해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유사)가족주의, 서열의식, 권위주의, 교육 강조, 엘리트주의, 온정주의 등과 같은 현상을 움직이는 문화적 심층으로 작용한다.”⁴³⁾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주장하고 있는 “문화적 문법”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가족주의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문화적 문법은 이러한 “문화적 심층 차원의 영향력 또는 존재 구속력”을 갖는 “기제”이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집합적 사고 및 행태를 이끌어가는 비가시적 틀(체계)”이 된다. 문화적 문법은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거의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 구성원들의 행위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문화적 의미체계”를 말한다.⁴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문법은 “오랜 전통을 통해 형성되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고 지속적이며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 양식 속에 내재된 믿음과 가치관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은 누구든지 그것의 영향력으로써

42) 송재룡, “한국소비문화의 밈(meme)과 기독교문화: 문화-언어적 관점에서”, 임성빈 외,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79.

43)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송재룡, 위의 책, 79에서 재인용.

44)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46-51. 송재룡, “한국소비문화의 밈(meme)과 기독교문화: 문화-언어적 관점에서”, 79-80. 재인용.

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송재룡이 옳게 주장했듯이 한국사회의 가장 문화적 문법의 키워드인 가족주의 또는 (유사)가족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주의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을 문화 심층적 차원에서 구속력을 행사하는 “감정우선주의, 연고주의 및 권위주의의 문법을 포섭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문법”이기 때문이다. 가족주의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문법이 보여주는 부정성의 특징은 아래에서 잘 나타난다.⁴⁵⁾

“특히 이 효 중심의 가족주의가 미친 부정성은 한국(조선) 사회에 혈연중심과 가계 중심의 가치와 덕목을 강하게 준거하는 배타적 집단주의 성향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우리 가족, 가문이나 가계, 또는 연으로 엮어진 집단은 ‘나의 집단’이 되고, 그 밖의 다른 집단은 ‘남의 집단’이 된다. ‘나의 집단’ 내에서는 신뢰와 결속이 잘 이뤄지지만, 그 경계를 넘어선 영역, 곧 연줄과 무관한 불특정한 단위 - 사람들이든 사회나 국가든 - 의 영역에서는 신뢰와 결속의 망이 구축되지 못한다. 때문에 내 집단 내의 룰, 예컨대 집단(또는 집안) 권력자(어른)에 대한 예의, 집단(집안)의 구성원들 간에 지켜져야 하는 룰(rule)만이 지켜야 할 룰이 된다. 반면에 내 집단 밖의 룰 - 곧 사회적 룰 - 은 준거력이 약해진다.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의 의식이 형성될 수 없다. 있다면 오직 ‘사사로운’ 공공성만이 있을 뿐이다”⁴⁶⁾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가족주의의 부정성의 특징을 배타적 집단이기주의의 성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족주의가 한국사회에서는 “단기간에 걸쳐 외부로부터 전파되거나 이식된 현상”이 아니며 그것은 “오랜 가족주의적 전통을 통해 형성되어 온 문화, 언어적 형상”이라는 사실이다. 가족주의의 “집단이기주의적 가치지향성”은 사회학자 벨라(Robert Bell)가 말하는 “마음의 습속(habits of heart)과 같은 것이다.⁴⁷⁾ 안타깝게도 가족주의의 부정성이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개인윤리차원의 노력이나 또는 사회제도의 차원에서 그 부정성의 극복을 시도하는 사회윤리차원의 행동이나 또는 기술문명의 발전에 의지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통해서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⁴⁸⁾

5. 가족주의, 교회세습 그리고 기독교윤리

한국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삶의 형태는 이기적 가족중심주의와 집단적 배타주의의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한국의 가족주의의 부정성은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개선방안이 개인적 차원이나 또는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문법”이나 또는 “문화적 습속”의 형태로 나타나는 한국의 가족주의의

45) 송재룡, “한국소비문화의 밈(meme)과 기독교문화: 문화-언어적 관점에서”, 80.

46) 박희, “한국의 가족주의적 조직 원리와 공공성의 문제”, 『호서문화논총』 제 11집 (1997), 55-58.

47) 송재룡, “한국소비문화의 밈(meme)과 기독교문화: 문화-언어적 관점에서”, 83.

48)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송재룡, “한국 가족주의와 준거 기준의 이중성을 넘어”, 현상과 인식, 23권 1/2호 (1999년 봄/여름), 164-165. 송재룡, “가족주의와 한국 사회의 ‘삶의 유형’ (두 개의 언어 게임 사이에서)”, 3-6.

부정성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족주의 문화의 부정성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의 성숙과 발전이 한국사회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치, 경제, 교육 등등,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족주의의 확대는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형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가족주의의 부정성이 특별히 세습을 찬성하는 한국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세습의 밑동은 (유사)가족주의 의식이다. 재벌가의 세습과 권력가의 세습 행태, 아니 우리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각각의 세습 행태 그 밑뿌리는 모두 같다. 이 모두는 같은 의식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자기 혈육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가 나타난다. ... 이 지향성은 어쩔 수 없이 친분 중심의 비좁은 틀 안으로 회귀코자 한다. 다른 지역 사람보다 자기 지역 사람에게, 다른 학교 출신보다 자기 학교 출신에게, 다른 교단/교회보다 자기 교단/교회 인사에게 더 이끌린다. 더 가깝게 느끼는 이에게 특혜를 준다. 친밀함의 범위와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사로운 집단의 이기주의 의식에 뿌리내려 있다. 그러므로 이에서 비롯되는 행태는 꼭 같이 불공평하고 부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늘날의 경제주의 지향성이 더해붙어 특혜는 경제/물질/재산의 혜택으로 나타난다. 교회 세습은 이러한 의식의 세계에 터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가족주의의 부정성은 혈연주의, 지역 연고주의와 같은 배타적 집단이기주의와 경제주의의 형태로 세습교회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기적 가족중심주의나 또는 집단적 배타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한국의 가족주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⁵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학⁵¹⁾과 기독교윤리학⁵²⁾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하의

49) 박영신,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교회세습”,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자료집(2013.2.19), 70.

50) 박영신의 견해를 따르면 가족주의의 부정성은 ‘시민다움’의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 즉 그는 교회구성원들이 ‘시민다움’을 회복함으로써 교회세습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시민다움은 “흔히 말하는 시민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이웃 일반에 대한 책임과 이어지은 삶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민다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됨’으로 돌아가, 현존하는 특권과 특혜의 구분과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이웃’으로 보실핌을 받는 그러나 뜻에서 ‘공공’영역에의 참여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가리킨다. 위의 책, 71.

51) 김명용 교수는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교회세습을 다음의 이유에 근거하여 비판한다: 1. 목회자의 세습은 사도 신조의 공교회 정신에 위배된다. 2. 목회자는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부르시는 것이다. 3.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의미이다. 4. 목회자의 세습은 성도들이 태만과 방임의 죄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목회자의 세습은 하나님나라의 거울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치명적으로 파괴시킨다. 6. 목회자의 세습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예언자적 메시지를 무력화시킨다. 7.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성장에 큰 손실을 입힌다. 김명용, 『이 시대의 바른 기독교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213-226. 비슷한 맥락에서 현요한교수도 목회자의 세습에 대해 비판적이다. 교회세습은 “교회론적으로 그것(연구자 주: 교회세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권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다. 나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말하는 교회의 네 가지 표징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세습은 교회의 일치성을 훼손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며,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하며, 교회의 사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세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교회가 말과 행위로 전파하는 하나님 상, 그리스도 상, 그리고 하나님나라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된다. 또한 소명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교회 세습이 정당한 소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교회 세습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신학적으로 고찰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인들은 그것이 상식이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습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한국교회

글에서 연구자는 그 해법을 복음서에서 가족을 이해하는 나사렛 예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본회퍼가 위임론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가정)과 공동체성의 의미를 살펴 볼 때 우리는 그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나사렛 예수의 개방적 가족공동체와 목회

먼저 가족에 대한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살펴보자. 신약성서는 이기적 가족중심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자의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⁵³⁾

여기에서 가족주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과는 전적으로 대립된다. 제자의 삶은 “가족관계가 자신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위기의 상황에서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상대적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바울신학에 의하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나눔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의 기초”가 되었다. 나사렛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 가족과 그 문화적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⁵⁴⁾

의 사회적 신뢰성을 더욱 실추시키는 일이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복음전파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사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변혁적 능력을 상실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요한, “교회세습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자료집, 50.

52) 기독교윤리학자인 유경동교수의 견해를 따르면 한국교회는 세습을 통해서 권위(authority)는 권력(power)으로, 정당성(legitimacy)은 정통성(legitimation)으로, 소명은 배금자본주의적 직업으로 이미 대체시켰다. 그는 한국교회의 세습에 대한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는 한국교회의 세습이 성경의 중심 내용인 구원의 서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비판한다. 둘째,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에 기초한 통한 ‘성령의 선물’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은사의 다양성과 상호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권력에 기대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법과 제도가 사회의 그것들보다 앞서야 한다. 그는 교회의 법과 제도가 개별 교단이나 자기 교회의 ‘아성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질서와 소통의 절차”로 선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경동, “교회세습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성직 세습, 그 마지막 유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자료집, 53-59. 여기에서 연구자는 특별히 사회의 법과 제도보다 앞서는 교회의 법과 제도의 중요성에 주목하려고 한다. 교회세습에 반대하는 전성민교수의 견해를 따를 때, 구약사상의 법과 제도는 일반 사회의 그것들을 초월하는 기준을 이미 갖고 있다. 이것은 구약윤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법과 윤리의 간극’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윤리는 단순한 준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 Gordon J. Wenham, “The Gap Between Law and Ethics in the Bible” //S 48 (1997): 17-29., 전성민, “교회세습에 대한 구약학적 고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자료집, 14에서 재인용. 교회세습을 반대하는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습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수준은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님을 보았다. 법 자체가 권력의 이해 때문에 왜곡될 수 있으며, 법의 실행 또한 얼마든지 겉으로는 그 절차를 적법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악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나뭇을 죽이고 그의 발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다.” 위의 책, 17.

53) 마 10:36-38.

54) 김은혜, “한국사회의 가족해체와 가족신학의 정립의 필요성”, 『장신논단』 제 39집 (2010), 233.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복음서의 말씀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의 사건이 바로 그 내용이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⁵⁵⁾

가족의 범주가 하나님나라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이기적인 가족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나사렛 예수의 말씀 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사건과 비슷한 결론이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확대된 가족의 의미”는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고 볼 수 있다. 열린 가족공동체의 형성의 가능성의 단초는 이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공동체의 삶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제시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을 넘어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점”은 가족주의의 배타성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론이다.⁵⁶⁾

그러면 이와 같이 타자를 향해 열린 개방적 가족공동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확대된 가족의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적 지향점에 관한 질문이다. 위의 질문들의 답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한국교회의 세습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삶의 양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 세습적 특권을 혈연을 통해 지속시키는 것을 찬성하며 그것을 보장하는 교회세습은 나사렛 예수의 말씀의 요청과 부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정책이 공정성(fairness)의 원칙을 벗어날 경우, 그 인사정책이 얼마나 정의(justice)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⁵⁷⁾ 후임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기회의 균등이 모든 후보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질 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정의로운(just)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교회세습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걸음은 폐쇄성, 자기중심성, 배타성에 기초하고 있는 가족주의의 부정성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할 때 나사렛 예수가 가르쳐주신 확대된 가족의 의미와 개방적 가족공동체의 의미는 한국교회 안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님의 위임으로서의 가족공동체와 목회

본회퍼의 신학적 의견에 기초할 때 가정(결혼), 노동(문화), 관현(정부), 교회는 인간의 사회적

55) 마 3:32-35.

56) 김은혜, “한국사회의 가족해체와 가족신학의 정립의 필요성”, 233.

57) 롤즈(J. Rawls)의 견해에 의하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의 원칙 - 1.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2. 차등의 원칙 - 을 만족시키는 정의를 의미한다. 차등의 원칙은 우선 기회균등의 원칙을 말한다. 또한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 배려 - 가장 불리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 원칙을 말한다.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교회세습은 교회공동체의 정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 Massachusetts, 1971), 64-84. 542-543.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공동체로 존재한다. 가정을 비롯하여 교회까지 이르는 사회적 공동체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영역이다. 즉 위의 네 가지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실천의 형태로 나타나길 원한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위임의 자리가 되며 여기에서 인간은 각 위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본회퍼가 주장하는 기독교윤리의 과제는 이와 같이 각 위임의 영역 안에서 인간의 의지(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뜻)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에서 나타난다.⁵⁸⁾ 하나님의 위임의 구체적인 한 영역으로 기능하는 가정, 즉 가족공동체를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와 하나가 되시듯이, 가정 안에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 ‘이 비밀은 크다.’(엡 5:31f.) 하나님은 이러한 일치에 풍요의 행복, 곧 새로운 생명탄생의 행복을 더해 주신다. 인간은 창조에 동참함으로써 창조자의 뜻 안으로 들어간다. 결혼을 통해 인간이 태어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이 출생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린이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노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듯이,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인간이 창조된다.”

이처럼 본회퍼는 가정, 가족공동체를 인간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위임의 자리로 이해한다. 가족공동체가 지향하는 윤리적인 삶은 “새로운 생명탄생”을 전제하는 “풍요의 행복”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과 섬김의 삶을 통한 하나님나라의 확장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본회퍼에 의하면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위임으로 존재하는 가정, 가족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의 내용이다. 본회퍼의 입장에 의하면 이기적인 가족중심주의, 집단적 배타주의, 폐쇄적 혈연주의와 연고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는 대립된다. 본회퍼가 말하는 가정, 가족공동체의 삶의 지향점을 견지할 때, 한국의 가족주의의 부정성과 불가분리의 관계 하에 있는 교회세습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세습을 찬성하는 목회자와 그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일까? 교회세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는 과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 교회세습을 실행하는 목회자가족의 관심이 진정으로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교회세습을 찬성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임의 영역인 가족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8) D. Bonhoeffer, *Ethik*, hg. v. E. Bethge / I. Tödt / E. Feil / C. Green /, DBW 6, (Gütersloh: Chr. Kaiser Verlag, 1998), 58.

6. 결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사의 윤리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가족은 자신의 삶의 출발의 근거이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체계이다. 그러나 가족주의는 부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삶의 성숙을 방해한다. 이기적 자기중심주의, 배타적 집단주의, 혈연주의, 지역적 연고주의, 정치적 지배질서 등등과 같은 부정성이 한국의 (유사)가족주의를 결정짓고 있다. 이러한 부정성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기적 가족주의의 부정성이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세습의 형태를 띠고 등장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세습 문제와 한국의 어느 대기업의 세습 문제가 한국사회의 일반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2000년대 이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는 감리교가 세습방지법을 제정(2012년)하고, 예장 통합측 교단이 세습방지법을 2013년 가을총회에서 결의하였다.⁵⁹⁾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가 2014년 각 교단의 총회에서는 어떻게 계속 이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분위기는 그리 밝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감리교단의 경우에 세습방지법 조항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특정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2013년 9월 25일에 감리회 입법의회에서 ‘세습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동일 교단의 특정 교회는 ‘연속해서’라는 문구가 갖고 있는 허점을 파고들었다. 즉 편법 세습 또는 변칙 세습을 단행했던 것이다.⁶⁰⁾ 예장 통합측은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한 일명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권’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법안을 만든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총대들이 신설법안조항의 1-2호 조항에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총대들이 “직전 목사 및 장로가 아닌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도 이를 금지하겠다는 3호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⁶¹⁾

필자는 가족공동체의 개념에 바른 이해가 한국교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

59) “개신교 내 목회자 세습방지에 대한 여론이 정착하고 있는 분위기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에서도 교회세습에 대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8일(필자 주: 2013년 9월)에 마친 예장 합동 총회에서 세습방지법과 관련해 서울강남노회와 서대구노회 등 2개 노회가 ‘직계 자녀에겐 담임목사직을 계승할 수 없게 해달라’는 현의안을 올렸고, 총대는 ‘세습 불가’에 동의했다. ... 이번 총회에서 세습방지가 법제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장 합동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분석된다. ... 예장 통합 총회에서도 ‘목회자대물림방지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목회자 대물림 금지가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조문은 헌법위를 통해 제정해야 하며 내년 총회 때 보고될 예정이다. ...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도 이번 총회를 통해 교회세습방지법안을 통과했다. 예장 합동-통합과는 달리 기장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 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항을 명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팽팽했고, 총대들은 신학적인 연구를 거친 후 내년 총회 때 다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41>

60)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87>

61)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5142> “1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호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3호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이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5142>

각한다. 나사렛 예수의 확대된 가족과 개방적 가족공동체의 의미와 본회퍼의 하나님의 위임으로 존재하는 가족공동체(가정)의 의미는 가족주의의 부정성과 교회세습의 부정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의 부분에서 필자는 본회퍼의 고백(1936년 1월 편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가 신학자와 목회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회심사건과 연관된다.

“나는 대단히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내게서 공명심을 보았고 그 공명심이 내 삶을 힘겹게 했지요. … 그러나 나사렛 삶의 방향을 바꿔줄 무언가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성경으로 다가갔습니다. … **여러 차례 설교했고 교회가 지닌 수많은 문제를 보았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Sache)로 인해 나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지금 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 그때 성경이, 특히 산상수훈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 그것은 위대한 해방이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삶은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게 분명한 사실로 다가왔고 차츰 뚜렷해졌습니다. … 교회와 목회의 회복이 나의 최종 관심사였습니다.”⁶²⁾

지금은 목회세습을 시도하는 목회자들이 공명심이나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self-reflection)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본회퍼가 강조하는 “교회와 목회의 회복”이 한국교회의 “최종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62) 이텔릭체는 연구자가 강조한 것임. Dietrich Bonhoeffer, *A Testament to Freedom: The Essential Writings of Dietrich Bonhoeffer*, rev. ed., eds. Geoffrey B. Kelly and F. Burton Nelson (New York: Harper One, 1995), 424-425., Eric Metaxas, *Bonhoeffer: Pastor, Martyr, Prophet, Spy*. (Dallas: Thomas Nelson, 2010), 123.

변칙세습 현황조사 결과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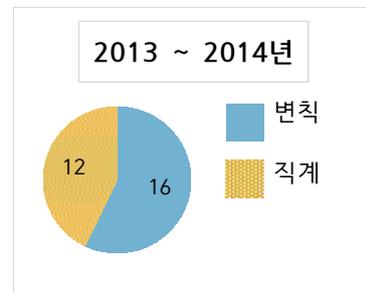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2013년 6월 29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습을 완료한 각종 사례를 수집하였다. 조사 내용은 교회의 일반적인 특성(소속 교단, 노회 또는 지방회, 지역, 출석교인 규모), 세습유형, 완료 연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으로 무작위 배포하였다.
- 세반연은 2013년 3월 12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세습 사례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2013년 7월 3일에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세습이 완료되었다고 공개한 61개 교회를 이번에 파악한 자료와 종합하였다.
- 두 차례에 걸쳐 수집한 제보내용을 알아본 결과, 총 122개 교회가 세습하였으며, 그 중 85개 교회가 직계세습을, 37개 교회가 변칙세습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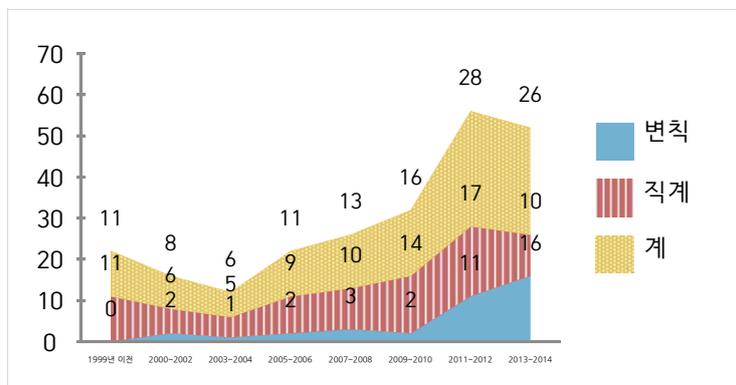
1) 항목별 분포

① 연도별 분포(단위: 교회 수)

시기	변칙	직계	계
2012년 이전	21	73	94
2013~2014년	16	12	28
계	37	85	122



연도	변칙	직계	계
1999년 이전	0	11	11
2000~2002	2	6	8
2003~2004	1	5	6
2005~2006	2	9	11
2007~2008	3	10	13
2009~2010	2	14	16
2011~2012	11	17	28
2013~2014	16	10	26
기타(파악안됨)	0	1	1
계	37	83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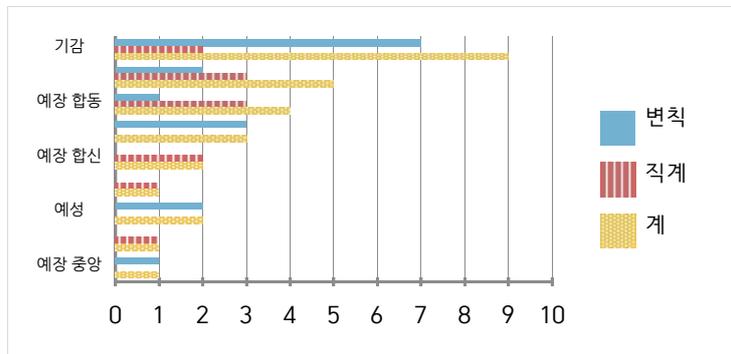
- 최근 세습을 진행한 교회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변칙세습의 비율 또한 매우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목회세습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세습방식을 포괄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② 교단별 분포(단위: 교회 수)

교단(전 기간)	변칙	직계	계
기감	10	30	40
예장합동	4	19	23
예장통합	6	5	11
기성	5	3	8
기침	3	4	7
예성	3	3	6
기하성	1	4	5
예장고신	0	4	4
예장백석	0	4	4
예장합신	0	3	3
한독선연	2	0	2
기장	0	1	1
예장개혁	0	1	1
예장고려	0	1	1
예장합동 보수	0	1	1
예장합동 전통	0	1	1
예장합동 정통	0	1	1
선교단체	1	0	1
예장계신	1	0	1
예장중앙	1	0	1
계	37	85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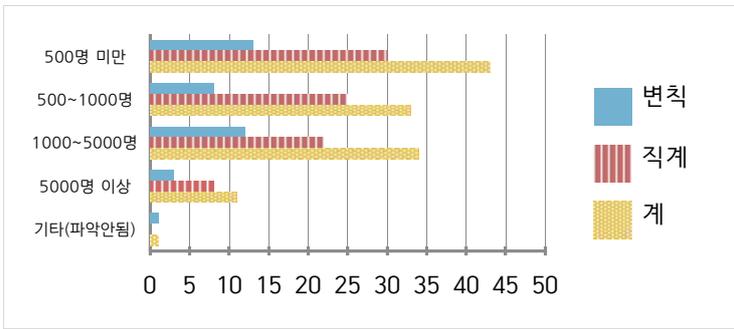
교단(2013~2014)	변칙	직계	계
기감	7	2	9
기성	2	3	5
예장 합동	1	3	4
예장 통합	3	0	3
예장 합신	0	2	2
예장 백석	0	1	1
예성	2	0	2
기침	0	1	1
예장 중앙	1	0	1
계	16	12	28



○ 교단분포에 있어 기감, 예장 합동, 예장 통합 등 한국교회에서 교세가 상대적으로 큰 교단에서 세습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는 변칙세습보다 직계세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 교세 및 교회 수를 고려했을 때, 세습 현상은 특정 교단이나 특정교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습반대운동 및 세습방지법 논의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부터는 변칙세습사례가 직계세습사례보다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기감과 예장 통합에서 두드러진다.

③ 규모별 분포(단위: 교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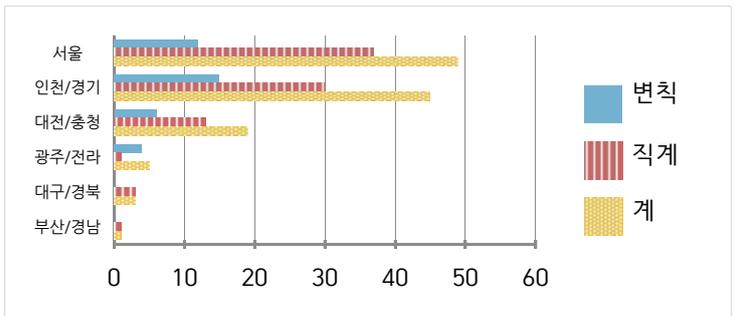
규모	변칙	직계	계
500명 미만	13	30	43
500~1,000명	8	25	33
1,000~5,000명	12	22	34
5,000명 이상	3	8	11
기타(파악안됨)	1	0	1
계	37	85	122



○ 교회의 규모는 세습과 크게 관련이 있지 않았다. 이는 교회개혁 및 교회성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목회환경에서, 작은 교회라도 물려받는 선택이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지역별 분포(단위: 교회 수)

규모	변칙	직계	계
서울	12	37	49
인천/경기	15	30	45
대전/충청	6	13	19
광주/전라	4	1	5
대구/경북	0	3	3
부산/경남	0	1	1
계	37	85	122



○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에서 세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밀도 및 지역별 교회 분포를 고려해보면 세습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수도권 못지않게 지역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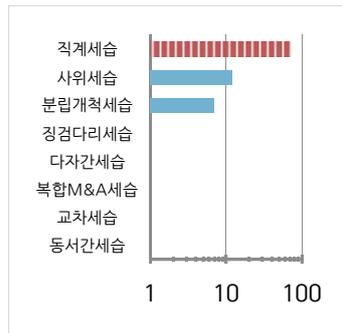
⑤ 유형별 분포(단위: 교회 수)

○ 세습 유형은 교회당 한 가지 유형으로만 고정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유형이 변하거나 세습방지법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분류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래와 같은 분류방식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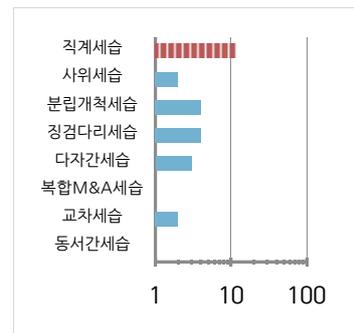
직계세습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전형적인 목회세습 방법이다.
사위 세습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사위세습 또한 직계세습의 일종으로 보아왔으나, 목회세습 방지법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로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교회 세습	모교회 자체를 분립시키는 경우와, 지교회 개혁 후 교인 일부를 파송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한 가지 유형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징검다리 세습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주는 격세세습(隔世世習), 허수아비 담임목사를 임시로 청빙하는 세습(일명 위장세습 또는 쿠션세습)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아들에게 물려준 후 사위에게 물려주었거나, 사위에게 물려준 후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등도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자간 세습	3개 이상의 교회가 담임목사직을 맞교환한 유형을 말한다.
복합M&A 세습	두 가지 이상의 변칙세습 방식을 활용한 후 합병 세습에 이르게 된 유형이다.
교차 세습	2개의 교회가 상대 교회의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서간 세습	담임목사직을 동서에게 물려준 경우를 말한다.

세습 유형	2012년 이전	2013~2014년	계
직계세습	73	12	85
사위세습	12	2	14
지교회세습	7	4	11
징검다리세습	0	4	4
다자간세습	0	3	3
복합M&A세습	1	1	2
교차세습	0	2	2
동서간세습	1	0	1
계	94	28	122



<2012년 이전>



<2013~2014년>

※ 직계세습 교회 중 한 곳은 세습시기를 파악할 수 없어, 2012년 이전으로 분류하였다.

- 2013년 이후에는 세습의 유형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다양한 세습 방식을 추적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단일 유형으로는 직계세습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규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목회세습방지법을 도입하고 강제하려는 노력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2) 변칙세습으로 확인된 교회 명단(총 37개 교회)

교회	교단	지역	유형	규모	완료년도	전임	후임
비전교회(용인)	기성	인천/경기	사위세습	B.100~500명	2002	신현근	신용수
CCC	선교단체	서울	사위세습	F.10,000명 이상	2002	김준곤	박성민
예수소망교회	예장통합	인천/경기	지교회세습	D.1,000~5,000명	2003	곽선희	곽요셉
순복음수지교회	기하성	인천/경기	사위세습	C.500~1,000명	2006	박요한	이성주
안양성결교회	예성	인천/경기	사위세습	D.1,000~5,000명	2006	조병창	강대일
새순교회	한독선연	서울	지교회세습	-	2007	마평택	마경일
하남새순교회	한독선연	인천/경기	지교회세습	B.100~500명	2007	마평택	마경일
서산성결교회	기성	대전/충청	사위세습	D.1,000~5,000명	2008	박광훈	이기용
포일남교회	예장통합	인천/경기	사위세습	B.100~500명	2009	이종구	김영주

천안침례교회	기침	대전/충청	사위세습	D.1,000~5,000명	2010	박성웅	안철호 (사임)
영일교회	기감	서울	동서간세습	B.100~500명	2011	강성일	김한세
대한교회	예장 합동	서울	사위세습	C.500~1,000명	2011	김삼봉	윤영민
은광교회	기성	광주/전라	사위세습	B.100~500명	2012	김태곤	최헌
인천동산교회	기감	인천/경기	사위세습	D.1,000~5,000명	2012	이진수	조혁
한사랑교회	기감	서울	사위세습	D.1,000~5,000명	2012	임영훈	황성수
창광교회	예장 계신	서울	사위세습	D.1,000~5,000명	2012	이병규	김창훈
왕성교회	예장 합동	서울	지교회 설립 후 M&A세습	D.1,000~5,000명	2012	길자연	길요나
노은대흥교회	기침	대전/충청	지교회세습	A.50~100명	2012	안종만	안정철
평택처음교회	예장 통합	인천/경기	지교회세습	B.100~500명	2012	윤대영	윤형진
대흥교회	기침	대전/충청	지교회세습	D.1,000~5,000명	2012	안종만	안정철
부천처음교회	예장 통합	인천/경기	지교회세습	D.1,000~5,000명	2012	윤대영	윤형진
청라 세계비전교회 (옛 신동산교회)	예장 중앙	인천/경기	부인세습 후 역M&A세습	C.500~1,000명	2013	김준환	박양임 (부인) 김성현 (아들)
임마누엘교회	기감	서울	징검다리세습	F.10,000명 이상	2013	김국도	김정국
간석제일교회	기성	인천/경기	교차세습	B.100~500명	2014	장자옥	고석현
천안 가나안교회	기성	대전/충청	교차세습	B.100~500명	2014	고석현	장하련
부천 성림교회	기감	인천/경기	다자간세습	C.500~1,000명	2014	김종석	김윤철
한양제일교회	기감	서울	다자간세습	C.500~1,000명	2014	서동원	김종석
은혜교회	기감	서울	다자간세습	D.1,000~5,000명	2014	문충웅	서동원
익산 반석교회	예성	광주/전라	사위세습	B.100~500명	2014	이병진	윤호웅
서서울교회	예장 합동	서울	사위세습	B.100~500명	2014	선병인	임홍순
인천제일교회 논현성전(본교회)	기감	인천/경기	지교회세습	C.500~1,000명	2014	이규학	이제일
새노래명성교회	예장 통합	인천/경기	지교회세습	C.500~1,000명	2014	김삼환	김하나
인천제일교회 구월성전(지교회)	기감	인천/경기	지교회세습	D.1,000~5,000명	2014	이규학	이제일
명성교회	예장 통합	서울	지교회세습	F.10,000명 이상	2014	김삼환	김하나
서천제일교회	기감	대전/충청	징검다리세습	B.100~500명	2014	한상명	한철희
순천광명교회	예장 통합	광주/전라	징검다리세습	B.100~500명	2014	박춘석	박은성
전주호남교회	예성	광주/전라	징검다리세습	C.500~1,000명	2014	김선기	김노별

- 천안침례교회는 2010년에 사위세습하였으며, 2013년에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자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위 목사는 같은 해에 담임목사직을 그만두었다.
- 청라 세계비전교회(옛 신동산교회)는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부인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었으며, 대출을 받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후 아들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맡겼다. 이후 기존 교회를 매각하여, 지교회가 본교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세습을 완료하였다.
- 기감 교단에 소속된 문충웅 목사(은혜교회)는, 목원대 동문 후배인 서동원 목사(한양제일교회)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었고, 후배 서동원 목사가 목회하던 자리를 사위인 김종석 목사

(부천 성림교회)에게 물려주었다. 또한 사위 김종석 목사가 목회하던 자리는, 후배의 부목사였던 김윤철 목사(한양제일교회 부목사)가 물려받았다.

- 사위세습을 진행한 서서울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직접 세반연 사무실에 전화하여 ‘본인이 교단헌법위 활동을 했던 적이 있으며 청빙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천제일교회는, 제보자에 의하면 2012년에 인천 구월동에 새로운 교회(“구월성전”)를 세운 후, 담임목사가 본교회와 새로운 교회를 오가면서 설교하였으며, 2~3개 교구(200~300명)를 새로운 교회로 보냈다고 한다. 이후 2014년에 아들을 구월성전 담임목사로 세웠다.

3) 직계세습으로 확인된 교회 명단(총 85개 교회)

교회	교단	지역	규모	완료 년도	전임	후임
도림교회	예장통합	서울	C.500~1,000명	1973	유병관	유의웅
부평교회	기감	인천/경기	D.1,000~5,000명	1980	홍창준	홍은파
길동교회	예장합동	서울	C.500~1,000명	1986	박만식	박주완
송월장로교회	예장합신	인천/경기	D.1,000~5,000명	1992	박도삼	박삼열
대구서문교회	예장합동	대구/경북	C.500~1,000명	1995	이성현	이상민
기동교회	기감	인천/경기	C.500~1,000명	1995	고용봉	고신일
수원성감리교회	기감	인천/경기	E.5,000~10,000명	1996	최용환	최승균
충현교회	예장합동	서울	E.5,000~10,000명	1997	김창인	김성관
주안감리교회	기감	인천/경기	D.1,000~5,000명	1997	한경수	한상호
공주 꿈의교회	기침	대전/충청	D.1,000~5,000명	1998	안중모	안희목
하늘비전교회	기침	서울	D.1,000~5,000명	1999	오관석	오영택
베다니교회	기감	서울	D.1,000~5,000명	2000	곽전태	곽주환
광림교회	기감	서울	F.10,000명 이상	2000	김선도	김정석
순복음성문교회	기하성	서울	A.50~100명	2000	문정열	(아들, 2004년 사임)
십정감리교회	기감	인천/경기	B.100~500명	2000	유세열	유재구
제천동부교회	기감	대전/충청	B.100~500명	2002	이용식	이현택
잠실양문교회	예장합동	서울	B.100~500명	2002	서혜은	서성범
성남대원교회	기감	인천/경기	D.1,000~5,000명	2003	임은택	임학순
강남제일교회	기침	서울	B.100~500명	2004	지덕	지병윤
경향교회	예장고려	서울	D.1,000~5,000명	2004	석원태	석기현
원천교회	예장백석	서울	E.5,000~10,000명	2004	문영철	문강원
분당만나교회	기감	인천/경기	D.1,000~5,000명	2004	김우영	김병삼
둔산성광교회	기감	대전/충청	D.1,000~5,000명	2005	이유식	이웅천
경산중부교회	예장고신	대전/충청	B.100~500명	2005	이동수	이석규
판암교회	예장합동	대전/충청	C.500~1,000명	2005	홍동표	홍성현
경신교회	기감	서울	C.500~1,000명	2005	김용주	김일중
동수교회	기감	인천/경기	C.500~1,000명	2005	주봉택	주학선
강북교회	예장합동	서울	B.100~500명	2006	김홍식	김두환
대성교회	예장합동	서울	C.500~1,000명	2006	서기행	서성용
동현교회	예장합동	서울	D.1,000~5,000명	2006	예종탁	예성철

**교회	예장합동 전통	서울	B.100~500명	2006	-	허승범
은파교회	기감	광주/전라	C.500~1,000명	2007	오세창	오형석
제천영광교회	예장합동 보수	대전/충청	B.100~500명	2007	이준호	이태규
종암중앙교회	예장개혁	서울	B.100~500명	2007	조경대	조성환
삼락교회	예장합동	서울	B.100~500명	2007	김조	김태영
금란교회	기감	서울	F.10,000명 이상	2008	김홍도	김정민
서울교회	기감	서울	A.50~100명	2008	배성산	배안용
창대교회	예장합동	서울	D.1,000~5,000명	2008	최성구	최용도
계산중앙교회	기감	인천/경기	D.1,000~5,000명	2008	최세웅	최신성
송의교회	기감	인천/경기	E.5,000~10,000명	2008	이호문	이선목
광명교회(용인)	예장백석	인천/경기	C.500~1,000명	2008	김병길	김정윤
복음천하감리교회	기감	대전/충청	B.100~500명	2009	곽성영	곽상원
충주남부교회	기감	대전/충청	D.1,000~5,000명	2009	김기웅	김광일
신광교회	기감	인천/경기	C.500~1,000명	2009	고창배	고인준
동부순복음교회	기하성	대구/경북	D.1,000~5,000명	2010	서상식	서순열
서산순복음교회	기하성	대전/충청	D.1,000~5,000명	2010	백승억	백종석
주례중앙교회	예장고신	부산/경남	C.500~1,000명	2010	이종승	이영원
시흥중앙교회	예성	서울	D.1,000~5,000명	2010	김재송	김성은
대평교회	예장합동	서울	B.100~500명	2010	성명환	성백권
인천힐들교회	기감	인천/경기	B.100~500명	2010	서명섭	서일원
선린교회	기감	인천/경기	C.500~1,000명	2010	권용각	권구현
대광감리교회	기감	인천/경기	D.1,000~5,000명	2010	박종화	박성일
만수교회	기감	인천/경기	D.1,000~5,000명	2010	성중경	성요한
순복음의정부교회	기하성	인천/경기	D.1,000~5,000명	2010	박종선	박정호
경서교회	예장합동	인천/경기	D.1,000~5,000명	2010	홍재철	홍성익
동산비전교회	예장고신	대구/경북	C.500~1,000명	2011	박태경	박현민
천안갈릴리교회	기감	대전/충청	D.1,000~5,000명	2011	이창준	이동섭
신월동교회	예성	서울	C.500~1,000명	2011	고용복	고신원
수동교회	예장통합	서울	C.500~1,000명	2011	정완모	정기수
새서울교회	예장합동	서울	B.100~500명	2011	김복천	김성은
서부교회	예성	인천/경기	C.500~1,000명	2011	이윤구	이성은
부천 해린교회	예장합동	인천/경기	E.5,000~10,000명	2011	이남웅	이바울
대산감리교회	기감	대전/충청	B.100~500명	2012	강환호	강태규
빛교회	기감	서울	B.100~500명	2012	양수일	양태우
서울제일교회	기감	서울	B.100~500명	2012	심원보	심규환
대서울교회	예장고신	서울	B.100~500명	2012	방의혁	방정기
승복교회	예장통합	서울	C.500~1,000명	2012	김태수	김충호
상록교회	예장합동	서울	B.100~500명	2012	김동안	김은환
강동제일교회	예장합동 전통	서울	B.100~500명	2012	이흥재	이정기
부천동광교회	예장통합	인천/경기	C.500~1,000명	2012	류철량	류재상
원미동교회	예장통합	인천/경기	C.500~1,000명	2012	김영진	김승민
연정교회	예장합동	인천/경기	C.500~1,000명	2012	김용실	김동원
서산석남교회	기성	대전/충청	B.100~500명	2013	김차열	김광호
봉신성결교회	기성	서울	B.100~500명	2013	김승복	김정준

한양교회	예장합동	서울	B.100~500명	2013	김진명	김판중
남문교회	예장합신	서울	B.100~500명	2013	이선웅	이건희
광야교회	예장합신	서울	B.100~500명	2013	황경섭	황성운
조원교회	기감	인천/경기	B.100~500명	2013	서경달	서원석
성남성결교회	기성	인천/경기	B.100~500명	2013	이용규	이호현
산성교회	기침	인천/경기	C.500~1,000명	2013	이천수	이태진
안양광명교회	예장백석	인천/경기	B.100~500명	2013	김병길	김정윤
안산시민교회	예장합동	인천/경기	C.500~1,000명	2013	이무영	이성관
청주희돌교회	기감	대전/충청	C.500~1,000명	2014	임복만	임사무엘
시은소교회	예장합동	인천/경기	E.5,000~10,000명	2014	김성길	김철
일심교회	예장백석	서울	C.500~1,000명	2007이후 (미확인)		고기웅

※ 예장합동 전통 교단에 소속된 모 교회의 경우, 아버지 허모 목사가 유학을 다녀온 아들 허승범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었으나, 수개월 후 후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났다. 해당 교회 사무간사는 ‘아들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을 유포하여 노회장인 아버지가 쫓아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재는 아들과 연락 두절 상태이고, 세습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소개

1. 조직

고문	김복경 목사 전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손봉호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형기 교수 장신대 명예교수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원로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 바른교회아카데미
	백종국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오세택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지도위원	강영안 교수 서강대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이문식 목사 광고산울교회
	전재중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정주채 목사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황광민 목사 석교감리교회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 함께여는교회
사무국	교회개혁실천연대
회원단체	감리교수호위원회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2.0목회자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	

2. 연혁 및 활동내용

2012. 10. 7/ 10. 15/ 11. 12 왕성교회 세습 철회 촉구 피켓 시위

2012. 11. 2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출범 기자회견

2013. 1. 8 대중 좌담회 <교회 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패널: 양희승 대표 (청어람아카데미 대표기획자)_다시 개신교 정신으로
패널: 나이영 부장 (CBS 종교부)_교회세습 상식에서 생각하자
양혁승 교수 (연세대 경영학부)_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 어떻게 볼 것인가
박득훈 목사 (새맘교회)_교회세습, 낯은 가족부대

2013. 1. 20 성남성결교회 세습 철회 촉구 피켓 시위

2013. 2. ~ 현재 교회세습방지법안 입법 활동 전개

- 세습방지법안 발의 및 포럼 협조요청 공문 발송
(예장통합: 평양, 서울, 순천, 경서, 경남, 강동 / 예장고신: 경기, 경인 / 기장: 군산 / 예장합신: 경기북 총 10개 노회장, 서기에게 발송(20통), 주소변경 반송 1통)
- 교회세습 의혹 사실 확인 및 입장표명 요청 공문 발송
(총 23개 교회 발신, 답신공문 3개 교회 수신, 1개 교회 세습 확인, 19개 교회 전화응답)
- 교회세습방지법에 대한 각 교단의 입장표명 요청 공문 발송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합신, 예장고신, 기장, 기성 총 6개 교단 발신. 답신 3개 교단, 입장표명 거부 3개 교단)

2013. 2. 4 포럼 <교회 세습 여론 인식 연구 발표>

- 사회: 김애희 사무국장 (교회개혁실천연대)
발제: 이만식 교수 (장신대 사회복지학)_교회세습 여론 인식조사 결과 발표
논찬: 조성돈 교수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운동본부장)_‘교회세습 여론 인식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
최현중 교수 (서울신대 사회학)_‘교회세습 여론 인식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논찬

2013. 2. 19 학술 심포지엄 <교회 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 사회: 김근주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
발제: 전성민 교수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_교회 세습에 대한 구약학적 고찰
김판임 교수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신약학)_교회 세습에 대한 신약학적 고찰
배덕만 교수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_교회 세습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
현요한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_교회 세습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_교회 세습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박영신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_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2013. 7. 3 교회 세습 제보 결과 발표 및 세습 시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 사회: 문형채 총무 (바른교회아카데미)
인사말: 방인성 목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발표: 김애희 사무국장 (교회개혁실천연대)_세습현황조사
문형채 총무 (바른교회아카데미)_향후 활동 계획

2013. 7. 30 포럼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

- 사회: 신동식 목사 (빛과소금교회, 기윤실 생활신앙실천운동 본부장)
- 발제: 조주희 목사 (성암교회)_세습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평양노회 헌의를 중심으로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_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
- 간담회: 기장 군사노회, 예장고신 경기노회, 예장통합 평양노회, 예장통합 경남노회 등

2013. 9. 9 ~ 11 세습방지법 가결 호소 피켓 시위 (예장통합 총회)

2013. 9. 13 '예장 통합의 <교회세습방지법> 가결에 대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사회: 조제호 처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인사말: 백종국 공동대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 경과보고: 김애희 사무국장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 성명서: 방인성 목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 제언: 방인성 목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2013. 9. 24 ~ 27 세습방지법 가결 호소 캠페인 전개 (예장고신/기장총회)

2013. 10. 8 '교단총회의 세습방지법 가결을 환영하며' 논평발표

2014. 2. 11 소책자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안내서> 발간

- 저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 출판: 뉴스앤조이 / 쪽수: 32쪽 / 출간일: 2014년 2월 11
일 / 초판발행부수: 5,000부

2014. 3. 10 '명성교회의 변칙 세습을 우려한다!' 성명서 발표

2014. 4. 8 교회세습반대 순회강연(여수)

- 주제강연: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 패널: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최규식 목사(은현교회)
정기철 목사(여수성광교회)

2014. 4. 29 교회세습반대 순회강연(부산)

- 주제강연: 정주채 목사(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 패널: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가정호 목사(세대로교회, 부산 기윤실 사무국장)
안현식 교수(동명대, 부산교회개혁연대대표)

2014. 5. 22 교회세습반대 순회강연(대전)

- 주제강연: 손봉호 고문(서울대 명예교수)

패널: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조성배 목사(반석중앙침례교회, 대전기윤실 교육부장)

전남식 목사(꿈이있는교회, 성서대전 실행위원)

2014. 7. 15 교회세습반대 순회강연(부천)

- 주제강연: 오성택 목사(두레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패널: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원영대 목사(부천평안교회)

정성규 목사(예인교회)

최우돈 장로(건강한작은교회연합)

2014. 9. 17 '변칙세습을 포함한 포괄적인 세습금지 방침 마련을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2014. 9. 23 교회세습반대 순회강연(전주)

- 사회: 조정호 목사(바른교회아카데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

주제강연: 이영재 목사(전주화평교회)

패널: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 실행위원장)

오성택 목사(남전주성결교회, 전주 기윤실 공동대표)

양인석 목사(전주강림교회)

조정호 목사(바른교회아카데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

2014. 11. 4 교회세습반대 순회강연(대구)

- 주제강연: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패널: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이승현 목사(대구평강교회)

박윤배 교수(경북대, 대구기윤실 공동대표)

2015. 5. 26 2015 변칙세습포럼

- 사회: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발제: 김동춘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황광민 목사(석교감리교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지도위원)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변칙세습포럼

발행일 | 2015년 5월 26일

발행인 |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편집인 | 김애희

편 집 | 현정수

발행처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150-034)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10 영남빌딩 205호

Tel 02-2068-9489

Fax 02-741-2794

churchseban@gmail.com

www.seban.kr